

감정평가서

APPRAISAL REPORT

건명: 주식회사 우주건설중기 소유물건
(2025타경11809)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법보좌관 송석근

감정평가서번호: 충남-2025-06-K045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 의뢰목적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타인(의뢰인 또는 제출처가 아닌 자)이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복사, 개작(改作), 전재(全載)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충남감정평가사사무소

(부동산)감정평가표

이 감정평가서는 감정평가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감정평가이론에 따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기에 서명날인합니다.

감정평가사
정호순

(인)

감정평가액	일십사억칠천육십육만팔천원정(₩1,470,668,000.-)					
의뢰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법보좌관 송석근		감정평가목적	법원경매		
채무자	-		제출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경매2계		
소유자 (대상업체명)	주식회사 우주건설중기 (2025타경11809)		기준가치	시장가치		
			감정평가 조건	-		
목록 표시근거	귀 제시목록		기준시점	조사기간	작성일	
			2025.06.09	2025.06.04 ~ 2025.06.09	2025.06.09	
감정평가 내용	공부(公簿)(의뢰)		사정		감정평가액	
	종류	면적(㎡) 또는 수량	종류	면적(㎡) 또는 수량	단가	금액
	토지	4,364	토지	4,364	337,000	1,470,668,000
		이	하	여	백	
	합계					₩1,470,668,000
심사확인	본인은 이 감정평가서에 제시된 자료를 기준으로 성실하고 공정하게 심사한 결과 이 감정평가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므로 이에 서명날인합니다.					
	심사자 : 감정평가사 조창호			(인)		

1. 대상물건 개요

1. 대상물건 내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기호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 교통	형상 지세	2025 개별지가 (원/㎡)
(1)	목천읍 삼성리 산51	임야	4,364	건축예정지	계획관리	세로(가)	부정형 완경사	14,600

2. 대상물건의 형상 등

별지 '토지감정평가요항표' 참조

3. 기준시점 등

기준시점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라 대상물건의 가격조사를 완료한 날짜인 2025.06.09.일로 하였습니다.

4. 실지조사 실시기간 등

실지조사 실시기간은 2025.06.04. ~ 2025.06.09.일입니다.

II. 기준가치 및 감정평가조건

1. 기준가치 결정 등

기준가치란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가치로서 대상물건이 통상적인 시장에서 충분한 기간 동안 거래를 위하여 공개된 후 그 대상물건의 내용에 정통한 당사자 사이에 신중하고 자발적인 거래가 있을 경우 성립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물건의 가액(價額)인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 감정평가조건

없습니다.

3. 그 밖의 사항

■ 대상물건의 소재지, 지목, 면적, 수량 등의 목록표시는 귀 제시목록에 의하였습니다.

■ 대상물건은 별지 ‘지적개황도’ 및 ‘사진용지’와 같은 위치에 소재하는 것으로 목측되나, 정확한 지적경계 및 위치는 측량 등의 필요한 조치가 요망됩니다.

■ 대상물건 지상에 소재하고 있는 옹벽(석축) 등은 토지의 부합물로서 토지에 포함하여 평가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5

■ 대상물건 공부상 지목은 '임야'이나 아래와 같이 '건축신고'를 필하고 착공신고 후 공사중단된 상태로서 관계기관을 통한 탐문조사 결과 대상물건과 관련된 건축인허가 등은 기준시점 현재 유효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바, 경매진행 및 입찰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신고사항-----

- 허가번호: 2022-건축과-건축신고-197
-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산51
- 주용도: 제2종근린생활시설
- 기타용도: 제조업소
- 대지면적: 4,364㎡
- 건축면적: 444.5㎡
- 연 면 적: 444.5㎡
- 허가/신고일: 2022-05-31

[자료출처:건축행정시스템 세움터]

■ 대상물건은 기준시점 현재 '건축신고'를 필하고 착공신고 후 토목공사중 공사중단된 상태로 현실의 이용상황, 인허가여건, 현재까지의 공정률 등을 종합참작하여 감정평가하였으며, 추후 인허가의 취소 등 기타 사유발생시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경매진행 및 입찰참여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물건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와 같이 '건축자재·폐자재(보강토블럭, 주름관, 목재파레트)' 등이 적치되어 있는바, 경매진행 및 입찰참여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II. 감정평가액 산출근거

1. 평가목적

대상물건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소재 '신도마을' 복서측 인근에 위치하는 부동산으로서, 경매 목적의 감정평가입니다.

2. 평가기준

본건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평가관련 제규정에 따라 평가하였습니다.

3. 감정평가방법의 종류

가. 원가법

대상물건의 재조달원가에 감가수정(減價修正)을 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나. 거래사례비교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事情補正),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다. 공시지가기준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라. 수익환원법

대상물건이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의 현금흐름을 환원하거나 할인하여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

4. 감정평가방법의 적용

토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14조에 따라 토지의 주된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따라 ‘거래사례비교법’으로 산출한 시산가액과 비교하여 합리성을 검토하였습니다.

IV.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평가방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補正)을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 비교표준지 선정 및 그 사유

기준시점 이전에 공시된 공시지가 중 가장 가까운 시점에 공시된 「2025년 공시지가」 중 대상물건과 용도지역이 동일하고 이용상황이 유사하여 본건과 비교성이 높은 인근지역 공시지가표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시기준일 : 2025. 1. 1)

기호	소재지	면적(㎡)	지목	이용상황	용도지역	도로교통	형상지세	공시지가 (원/㎡)
A	목천읍 삼성리 111-1	1,894	답	전	계획 관리	맹지	부정형 완경사	99,700

표준지 기호	A	공시지가(원/㎡)	99,700
선정 사유	표준지 'A'가 대상물건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용도지역 및 이용상황이 동일하며 인근환경 등이 유사한바, 표준지 'A'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3. 시점수정

가. 생산자물가지수

기준월	2024년 12월	2025년 04월	변동률(%)
물가지수	119.52	120.24	0.602(상승)

나. 지가변동률

◆ 천안시 동남구 용도지역별 (2025.01.01.~2025.06.09.) (단위 : %)

기 간	계획관리지역	비고
2025.01.01 ~ 2025.04.30.	0.593	$(1 + 0.00593) * (1 + 0.00151 * 40/30) \approx 1.00796$
2025.04.01 ~ 2025.04.30	0.151	
누계치	0.796	

※ 지가변동률 미고시 기간은 직전 고시월의 것으로 연장 적용하였습니다.

다. 시점수정치 결정

생산자 물가지수는 일반재화의 전국적인 물가변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해당지역의 지가변동상황을 지가변동률이 보다 잘 반영한다고 판단되는 바, 해당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시점수정치로 결정하였습니다.(1.00796)

4. 지역요인 비교

용도지역 및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는 인근지역에서 비교 공시지가 표준지를 선정하였는 바, 지역요인의 격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1.000)

5. 개별요인 비교

가. 개별요인의 비교항목

대상물건이 속한 용도지대를 기준으로 대상물건과 비교표준지와의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및 기타조건 등에 따른 비교항목을 설정하여 비교·분석하였습니다.

◆ 농경지대의 개별요인 비교항목

조 건	항 목	세 항 목
접근조건	교통의 편부	취락과의 접근성, 농로의 상태
자연조건	일조 등	일조, 통풍, 주변환경 등
	토양, 토질	토양, 토질의 양부
	관개, 배수	관개의 양부, 배수의 양부
	재해의 위험성	수해의 위험성, 기타 재해의 위험성
획지조건	면적, 경사 등	면적, 경사도, 경사의 방향, 이용상황
	경작의 편부	형상부정 및 장애물에 의한 장애의 정도
행정적조건	행정상의 조장 및 규제정도	보조금, 용자금 등 조장의 정도, 규제의 정도
기타조건	기타	장래의 동향
		기타

나. 개별요인 비교내역

대상물건		비교표준지		개별요인 비교					
기호	소재지	기호	소재지	접근	자연	획지	행정	기타	비교치
(1)	목천읍 삼성리 산51	A	목천읍 삼성리 111-1	1.16	1.00	1.30	1.20	1.00	1.810
	대상물건은 비교표준지보다 교통의 편부 등(보다 양호) 접근조건 우세, 이용상황 등(보다 양호) 획지조건 우세, 대상물건은 건축신고를 필한 건축예정지(보다 양호) 인바, 행정적조건에서 우세합니다.								

6. 그 밖의 요인 보정

가. 취지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에서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가 섞여있어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대법원판례 <2004.5.14 선고 2003다 38239 판결>, 국토교통부 질의회신 <건설부 토정 30241-36538호(1991.12.28)> 등을 근거하여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함입니다.

나. 인근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

기호	자료명	의뢰처 (수집기관)	기준시점 (가격시점)	사 례 내 역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사례가격 (원/㎡)
가	담보평가	감정평가정보 (KPAHUB)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4.06.19.	목천읍 삼성리 12■■■■	답	계획관리	278,000
나	실거래자료		2023.03.27.	목천읍 삼성리 23■■■	답	계획관리	212,121

다. 사례의 검토 및 보정치의 산정

위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는 시장가치 기준 평가사례거나 사인간의 정상적인 거래가 이루어진 토지로서 대상물건의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대상물건의 지가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공시지가를 기준한 가격에 비하여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비교사례 선정

사례 기호	가	사례단가(원/㎡)	278,000
선정 사유	평가사례 '가'가 대상물건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물건특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바, '가'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2) 비교사례에 적용할 시점수정치(해당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로 적용)

기 간	시점수정치	비고
2024.06.19. ~ 2025.06.09.	1.01898	천안시 동남구 계획관리, 사례 '가'

(3) 지역요인 비교

용도지역 및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는 인근지역에서 비교사례를 선정하였는 바, 지역요인의 격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1.000)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4) 개별요인 비교 (용도지대를 기준으로 비교표준지와 비교사례를 비교)

비교표준지		비교사례		개별요인 비교					
기호	소재지	기호	소재지	접근	자연	획지	행정	기타	비교치
A	목천읍 삼성리 111-1	가	목천읍 삼성리 12■■-■■■	0.65	1.00	1.00	1.01	1.00	0.657
비교표준지는 비교사례보다 교통의 편부 등(보다 불량) 접근조건 열세, 비교사례 일부는 점도구역인바, 행정적조건에서 우세합니다.									

(5) 비교사례를 기준으로 한 비교표준지의 시산가액

비교표준지		비교사례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시산가액
기호	소재지	기호	소재지	사례가격				
A	목천읍 삼성리 111-1	가	목천읍 삼성리 12■■-■■■	278,000	1.01898	1.000	0.657	186,113

(6) 기준시점에 있어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 비교표준지의 가액

기호	토지 소재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시산가액 (원/㎡)	격차비
A	목천읍 삼성리 111-1	99,700	1.00796	-	-	100,494	1.852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유사물건의 토지가격 수준

(자료출처 : 인근 부동산업소)

계획관리지역 농경지	㎡당 180,000 ~ 300,000원 내외
------------	--------------------------

(8) 인근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기호	자료명	의뢰처 (수집기관)	기준시점 (거래시점)	사 례 내 역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사례가격 (원/㎡)
다	담보평가	감정평가정보 (KAPAHUB)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5.01.23.	목천읍 삼성리 23■-■	공장용지	계획관리	392,000
라	실거래자료		2024.12.23.	목천읍 삼성리 21■	전	계획관리	467,224
마	담보평가		2024.02.27.	목천읍 삼성리 산5■	임야	계획관리	323,000 (본건전례)
바	담보평가		2023.07.10.	목천읍 삼성리 24■-■	공장용지	계획관리	412,000
사	담보평가		2023.02.07.	목천읍 삼성리 24■-■	공장용지	계획관리	403,000

(9) 그 밖의 요인 보정치 결정

토지가격은 해당 토지의 가격형성요인 뿐만 아니라 공공사업의 계획 및 시행, 인근 유사지역의 거래사례 등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바, 상기 격차비 등을 기준으로 평가사례 및 거래사례의 수준 및 자료의 정확성, 대상물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A): 1.85**로 결정하였습니다.

감정평가액의 산출근거 및 결정의견

7. 토지단가 결정

기호	표준지	공시지가 (원/㎡)	시점수정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밖의 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A	99,700	1.00796	1.000	1.810	1.85	336,503	337,000

8.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구 분		공부면적 (㎡)	사정면적 (㎡)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 고
토 지	기호 (1)	4,364	4,364	337,000	1,470,668,000	건축예정지

V.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1. 평가방법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비교사례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를 거쳐 대상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평가하였습니다.

2. 비교 거래사례 선정 및 그 사유

대상물건과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역요인, 개별요인 등이 유사하여 비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는 거래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호	자료명	의뢰처 (수집기관)	기준시점 (가격시점)	사 례 내 역			
				소재지	지목	용도지역	사례가격 (원/㎡)
나	실거래자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2023.03.27.	목천읍 삼성리 23■-■	답	계획관리	212,121

사례 기호	나	사례단가(원/㎡)	212,121
-------	---	-----------	---------

선정 사유	대상물건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물건특성이 유사하여 비교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최근의 거래사례 '나'를 비교사례로 선정하였습니다.
----------	-------------------------------------------------------------------------

3. 사정보정

사정보정이란 평가액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관계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입되어 있거나 거래당사자가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적정하지 않은 가액으로 거래된 경우 그러한 사정이 없는 가액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의미하며, 상기 선정된 사례는 현장조사시 조사된 인근지역의 시세수준과 부합하는 등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되어 별도의 사정보정은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1.00)

4. 시점수정 (해당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변동률로 산정)

기 간	시점수정치	비고
2023.03.27. ~ 2025.06.09.	1.03717	천안시 동남구 계획관리, 사례 '나'

5. 지역요인 비교

용도지역 및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하고 지리적으로 근접하는 인근지역에서 비교사례를 선정하였는 바, 지역요인의 격차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1.000)

6. 개별요인 비교

대상물건이 속한 용도지대를 기준으로 대상물건과 비교사례의 접근조건, 자연조건, 획지조건, 행정적조건, 및 기타조건 등에 따른 비교항목을 설정하여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습니다.

대상물건		비교사례		개별요인 비교					
기호	소재지	기호	소재지	접근	자연	획지	행정	기타	비교치
(1)	목천읍 삼성리 산51	나	목천읍 삼성리 23■■-■	1.00	1.00	1.30	1.20	1.00	1.560
	대상물건은 비교사례보다 이용상황 등(보다 양호) 획지조건 우세, 대상물건은 건축신고를 필한 건축예정지(보다 양호)인바, 행정적조건에서 우세합니다.								

7. 토지단가 결정

상기 제요인을 참작하여 하기 산식에 의하여 단가를 결정하였습니다.

$\text{산식} = \text{사례단가(원/㎡)} \times \text{사정보정} \times \text{시점수정} \times \text{지역요인} \times \text{개별요인}$								
기호	사례 기호	사례단가 (원/㎡)	사정보정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산정단가 (원/㎡)	결정단가 (원/㎡)
(1)	나	212,121	1.000	1.03717	1.000	1.560	343,209	343,000

8.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토지의 시산가액

구분		공부면적 (㎡)	사정면적 (㎡)	단가(원/㎡)	감정평가액(원)	비고
토지	기호 (1)	4,364	4,364	343,000	1,496,852,000	건축예정지

VI. 합리성 검토 및 토지가격 결정

1. 각 방법에 의해 산정된 토지의 시산가액(試算價額)

구 분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비 고
토 지	1,470,668,000	1,496,852,000	-

2. 합리성 검토 및 토지가격 결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의 평가액은 동 규칙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거래사례비교법 등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 그 적정성이 지지되고, 거래사례에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는 당사자간의 사정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가액을 토지가격으로 결정하였으며, 평가목적상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토지 감정평가액 결정	
토 지	1,470,668,000원

VII. 평가액 결정에 관한 의견

본건 평가액의 산출근거인 평가액 결정의 주된 방법은 관련법령에 따랐고, 그 산출과정 등이 공시지가기준법에 의한 토지가액의 합리성이 인정되므로 산출에 따른 금액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토지감정평가명세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 목 및 용 도	용도지역 및 구 조	면 적 (㎡)		감 정 평 가 액		비 고
					공 부	사 정	단 가	금 액	
(1)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산51	임야	계획관리지역	4,364	4,364	337,000	1,470,668,000	건축예정지
								₩1,470,668,000.-	
				이	하	여	백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1) 위치 및 주위환경

대상물건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소재 '신도마을'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주위는 공장, 농경지, 임야 등으로 형성되어 있는바, 제반 주위환경은 보통입니다.

(2) 교통상황

대상물건까지 차량 접근 가능하고, 인근 간선도로 및 버스정류장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제반 교통상황은 보통입니다.

(3) 형태 및 이용상태

대상물건은 남동향의 완경사지에 제2종근린생활시설(제조업소)로 신축신고 후 평탄하게 조성중인 건축예정지입니다.

(4) 인접 도로상태

대상물건 북동측으로 폭 약 2~3m 내외의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계획관리지역,
성장관리계획구역(목천읍11(산업형))
가축사육제한구역(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1000m이내지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준보전산지<산지관리법>,
공장설립승인지역(공장설립승인지역 1호)<수도법>

토지감정평가요항표

- | | | |
|---------------|-----------------------|----------------|
| (1) 위치 및 주위환경 | (2) 교통상황 | (3) 형태 및 이용상태 |
| (4) 인접 도로상태 | (5) 토지이용계획 및 제한상태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
| (7) 공부와의 차이 |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 |

(6) 제시목록 외의 물건

대상물건 지상에 별지 '사진용지' 와 같이 '건축자재(보강토블럭, 주름관, 목재파레트)' 등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7) 공부와의 차이

없습니다.

(8) 기타참고사항(임대관계 및 기타)

임대관계: 현장사정상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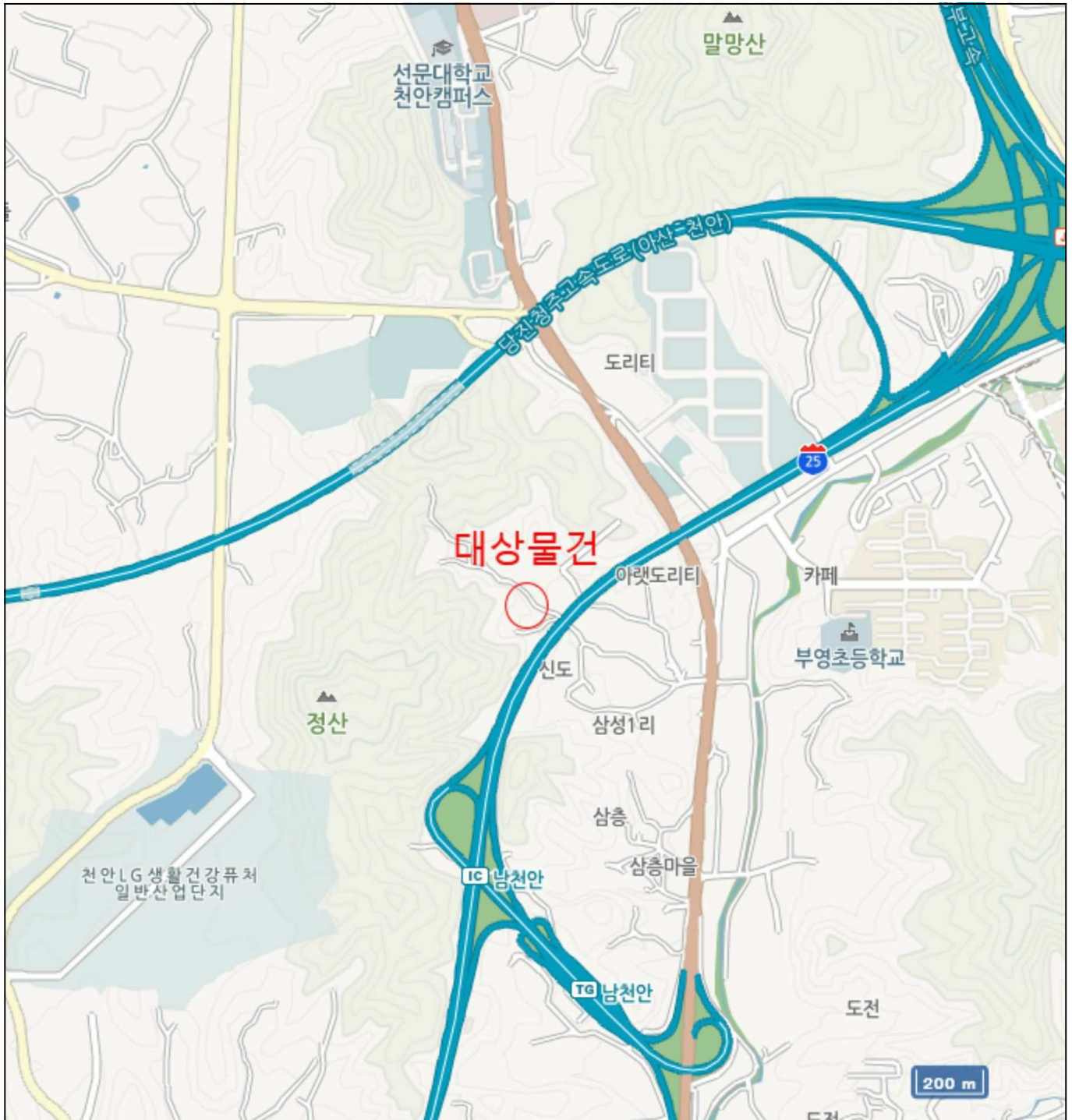
기타: 없습니다.

광역위치도



소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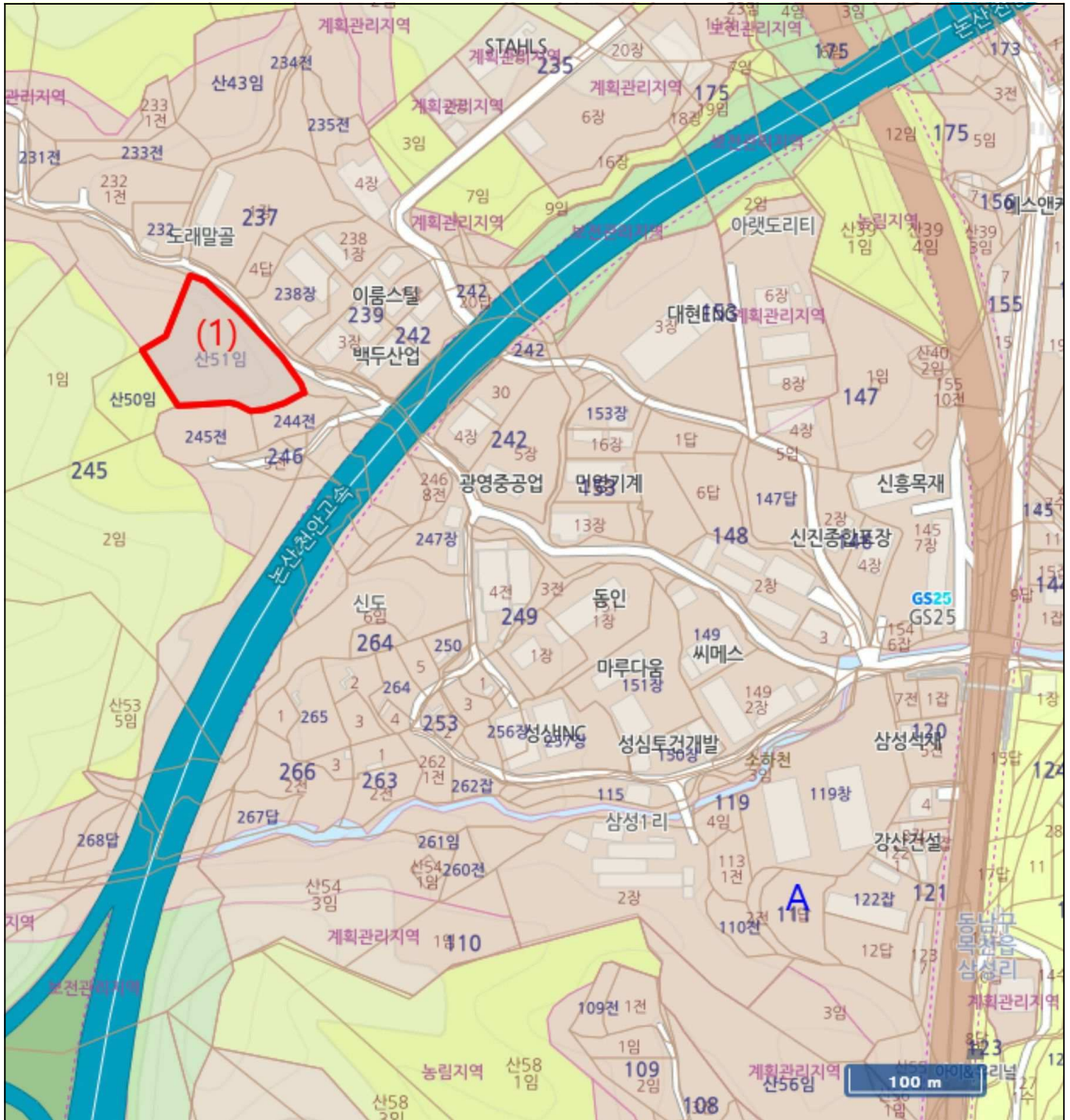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산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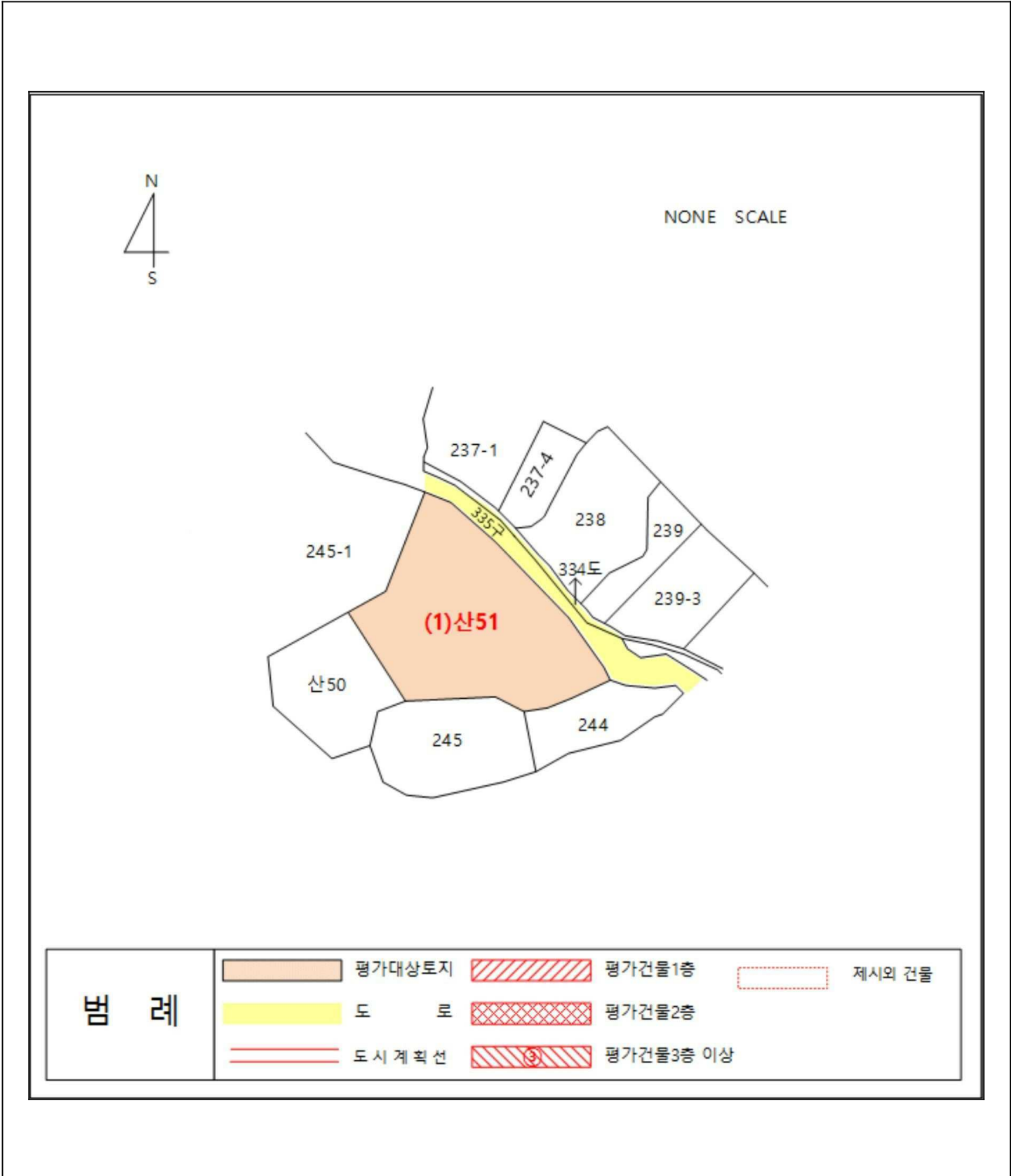
위치도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삼성리 산51 (1):대상물건, A:비교표준지
-----	--------------------------------------------



지 적 개 황 도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전경



북동측 도로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전경



대상물건 전경

사 진 용 지



대상물건 전경



대상물건 전경

사 진 용 지



건축자재 폐자재 등 적치물



건축자재 폐자재 등 적치물